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지배주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배주주의 배우자, 계열사, 임원 등

** 박상혁·민병덕·강민국·강준현·박성훈·허영·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대안

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①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 대여,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행위 등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가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대여 등을 한 자와 받은 자는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지배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을 거래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이를 사후 보고 및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업체계도 마련된다. 위반행위 조사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관 간 합동조사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거래질서 조사 전문성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역량이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그간 개별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정보는 상조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또한,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체계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계약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등 계약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 공고 >

현행법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등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공제조합 등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정보제공 확대 >

그 외에도,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기타 투자자산 등이 반영되어 소비자는 보고서 간 비교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가 신설된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해약 환급금 등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추후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제 관련 기록의 보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가 가능해져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사유 확대 >

기존에는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등 일부 중대한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법위반 반복시에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영업정지 사유가 추가되어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現)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미체결 등 8개 사유
(改) 결격사유 해당, 청약철회·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의무 불이행,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등 31개 사유로 확대

<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 신설 >

현행법상 공정위는 사업자 정보공개, 법위반 조사 등 일부 목적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시적인 업계현황 파악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업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④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기관

< 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적 역할이 큰 만큼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출자금(200억원) 미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

현행법상 공정위는 공제규정 등을 위반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임원을 해임하더라도 해임 확정 전까지 절차 소요 기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제조합이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불이행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써, 부적격 임직원의 업무관여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도적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향후계획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

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할부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근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김노윤 (044-200-4431)



1.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 위임 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 ☐ 매년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전 주석으로 기재할 사항*을 회계법인 등에 요청하고 있으나,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관련 자산내역 등

- 해당 요청은 임의 요청으로 미반영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필요사항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배주주 등과의 채권·채무 등 거래내역도 주석에 기재될 필요 있음

【 개선 사항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공정위에 제출·공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주석사항(지급보증금액, 예치금 등) 및 공통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기타 투자자산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

2. 폐업 등 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시 시·도지사 공고 등**【 현황 및 문제점 】**

-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사유 발생 시,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받지 못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고절차를 마련 필요

【 개선 사항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의무자의 시·도지사 통지 및 시·도지사의 공고 의무화

-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업자 폐업·등록취소 시 시·도지사의 공고절차(관보 또는 일간신문)를 참고하여 시행규칙에서 절차 구체화

3.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개별 소비자의 상조계약 관련 정보는 상조회사, 공제조합, 은행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 불편을 야기
- 소비자가 선수금 납입내역,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선 사항 】

-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공정위의 소비자 개인정보 요청 근거,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 근거 등을 마련
 -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조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4. 해임요구된 공제조합의 임직원 직무정지 및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 현황 및 문제점 】

- 법령위반 등 사유가 중하여 해임이 요구된 임직원은 해임요구 시점부터 직무를 제한하여 제재 대상 임직원의 업무를 배제할 필요
- 또한, 인가기준 미달 등 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 유도 필요

【 개선 사항 】

- 해임요구 시점부터 해당 임원의 직무배제 및 설립목적*을 미충족하는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등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운영 담보

* ▲출자금(2백억원) 등 설립인가 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공제사업 미운영 등

5.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열람 제공 의무 등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법은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관련 서류 보존의무가 없어 미보존 시 법령 준수 확인에 한계

【 개선 사항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열람 제공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기록을 거짓 작성시 3천만원, 미보존 또는 열람 미제공시 1천만원 이하

6.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당수가 소비자의 선수금을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활용하고 있어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저해

【 개선 사항 】

- 신용공여 정의* 신설 및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

*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밖에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 찬성,

사후 보고·공시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 신용공여 한도 위반 조사에 대한 금융위의 협조, 공정위-금감원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근거 신설
-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받은 자 모두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요청 근거 마련 등

【 현황 및 문제점 】

-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실태조사 실시 및 상시 관리·감독을 위하여 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명시적 법적 근거 부재

* 사업자 정보공개(\$18⑦, \$18의2①), 법위반 조사(\$35①, \$47②)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

- 이로 인해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

【 개선 사항 】

- 공정위의 사업자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및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 과태료 부과수준은 현행법 제18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자 정보공개 관련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시의 과태료(제53조 제2항 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사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법은 영업정지 사유로서 계약체결 강요 등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법위반 반복시에만 영업정지 처분 가능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타 소비자법의 경우 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 사항 】

-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범위반 반복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 확대
 - ※ (現)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미체결 등 8개 사유
 - (改) 결격사유 해당, 청약철회·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의무 불이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등 31개 사유로 확대

9.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등 청문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신규 도입되어, 처분의 신중성·적법성 확보 및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청문 절차 마련이 필요

【 개선 사항 】

-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청문 실시를 의무화

10. 시정명령 등의 위반시 공제조합에 과태료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 공정위는 법령을 위반한 공제조합의 운영·업무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의 강제수단이 부재

【 개선 사항 】

- 공제조합 임직원 징계·해임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2천만원) 부과*

* 상조 분야 공제조합과 유사기능(보증공제)을 수행하는 건설보증 관련 공제조합의 경우도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한도 2천만원(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생략)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6. (현행과 같음) 7. ----- -----. 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 ----- ----- ----- -----

나. (생략) 8.·9. (생략) <u><신설></u>	나. (현행과 같음) 8.·9. (현행과 같음) 10. <u>“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u>제출 및 공개</u>)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u>작성·제출 및 공개</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u>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u>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 <u>선수금</u>----- ----- ----- ----- -----.

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발급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 ⑫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급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⑨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
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
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
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
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
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
약에 따른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방
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양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감독 관련 기관·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수수료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 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생략)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	④ ----- ----- ----- ----- -----

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략)

<신설>

<신설>

-----.

1. -----

2. 제3항-----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
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
된다.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 최근 5년간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u>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u>	<u>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4.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u>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u>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u> ④ <u>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u>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u>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u>
--	---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신 설>

제34조(금지 행위) 선불식 할부거
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
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
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
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
록등”이라 한다)을 해당 계약
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
고, 그 보존기간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
등의 대상·범위 및 보존·열
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 행위)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11. ~ 18. (생략)

<신설>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
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
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마. (현행 라목과 같음)

11. ~ 18.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
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
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
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
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 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
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
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
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

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
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
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
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

-----구청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한국소비자
원-----
-----.

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삭 제>

제35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략)

<신설>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

-----.

1. -----

-----제27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제8항·제11항-----
-----제27조의4제3항·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부거래업자의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제34조의2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와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6항을 준용하되, “한국소비자원”을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 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삭 제>

<삭 제>

2.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신 설>

제46조(사무의 위탁)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보고, 조사·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에-----

-----.

<삭 제>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직원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신 설>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② (생략)

<신설>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생략)

②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1항-----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7조제13항-----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11. · 12.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④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한 자

11. · 12. (현행과 같음)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해임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제4항까지 및 제6항-----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⑧ 제5항----- ----- ----- -----. ⑨ -----제6항까지----- ----- -----.
---	---